	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	문서번호	BIST-X X-002
		주관부서	국제교육원
		담 당 자	담당

가. 목적

- 유학생정보시스템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학생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개선, 입국 전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유학생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.

나. 관련 법규

- 출입국 관리법 제19조의 ④, 시행령 제24조의 ⑧
- 출입국 관리법 제100조

다. 업무 흐름도

업무흐름도	업무시기	업무처리방법 및 관련서식
1. 외국인정보시스템 등록/인증절차 http://fims.hikorea.go.kr	신입생 입국 후	
⇩		
2.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별 표준입학허가서 입력		
⇩		
3. 외국인재학생 입국/입력/변경		
⇩		
4. 외국인유학생 통계조회 / 현황보고	매 2월, 5월, 8월, 11월	FIMS보고
⇩		
5. 외국인유학생 자격 변동/신고/출국	수시입력	

라. 업무처리지침 및 유의사항

1.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절차를 거쳐 시스템 관리자 등록을 한다.
   1) 신입생 입국 후 : 유학생기본정보 및 입학일자 등록
   2) 입학일자 등록 후에만 재학생으로 표기됨
   3) 재학생 관련 내용 : 체류기간 변경/연장 후 재학생 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함.
2. 사증발급 및 표준입학허가서 입력
   1) 체류기간변경시(D4->D2) 반드시 표준입학허가서 작성, 출력, 직인날인 후 제출.
      http://fims.hikorea.go.kr => 사증업무 => 표준입학허가서입력 => 국내체류자 선택 후 학생현황 입력 => 수정확인 => 표준입학허가서 출력 => 직인날인
3. 변동신고는 자동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고되며 수정이 불가함.
4. 유학생 통계조회 및 현황통보 : 매 2월, 5월, 8월, 11월 현황통보 클릭하여 보고(정담당자만이 보고 가능)
5. 변동신고
   1) 졸업(수료), 이탈, 제적 등 유학생이 귀국을 하거나 타대학으로 옮겨가는 등 변동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신고하여야 함(벌금부과사항).
   2)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고 : 현황/통계조회 => 신종합조회

마. 기타

1. 그 외 학사정보 및 성적, 면담 내용 등을 수시로 입력하도록 함.
2. 체류기간연장 후 '유학생기본정보'의 '재학생정보 수정대상자'를 클릭하여 모두 수정해야 함.
3. 학적현황, 면담내용 등 수시업데이트(어학센터는 어학센터에서 면담 기록 입력토록 조치)